

윤리규범

한미는 “인간존중 · 가치창조” 경영이념을 위하여 창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. 윤리규범은 “무엇이 올바른가?”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검토하도록 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지침서가 될 것이며 회사에 적용 가능한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여 개인의 품의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한미인의 약속입니다.

Ethic 1장 임직원 기본윤리

1. 한미인의 사명완수

- (1) 임직원은 한미인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(2)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.
- (3)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보고한다.
- (4)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(5) 동료 및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.

2.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한미인의 약속

(1) 이해상충 회피

-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.
-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,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(2)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

-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금전거래, 폭력, 차별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조직문화를 위하여 노력한다.

3. 부패방지를 위한 한미인의 약속

(1)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

-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 사용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.

(2) 직무관련 정보보호 의무

-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- 해당 정보를 취합하도록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임직원에게 그 정보를 요청하거나 문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과 내규에 따라 보호하며 관리한다.

(3) 금품 등의 수수 금지

-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공직자 등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해외부패방지법, 영국뇌물방지법 등의 해외 법령을 준수한다.
- 경조사비, 선물, 식사비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.

Ethic 2장 공정한 경쟁과 거래

1.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한미인의 약속

(1) 자유경쟁 추구

-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- 부패방지,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(2) 법규 준수

-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약사법,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을 지양하며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한다.
- 한미의 성장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, 임직원 개개인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가 기반이 됨을 지속적으로 다짐한다.

2.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한미인의 약속

(1) 법규 준수

- 사업파트너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간섭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대가성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사업 체결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사업 파트너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.
- 모든 거래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며 상호 영업비밀을 준수한다.
-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며 무단 사용, 복제, 배포,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(2)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존공영의 관계 구축

- 사업 파트너와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.
- 사업 파트너와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생협력한다.

Ethic 3장 모든 고객에 대한 윤리

1. 모든 고객에 대한 한미인의 약속

- (1) 혁신과 창의를 통하여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(2)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모든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- (3)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불만사항 및 제안 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
2.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한미인의 약속

(1) 이익 보호

-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
(2) 권리 보장

-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.
-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3. 재무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한 한미인의 약속

(1) 재무관리의 투명성

- 회사의 재무 정보는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 따라 정확하게 기록, 관리되어야 한다.
-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
(2) 성실한 정보 제공

- 재무정보는 관련 책임자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,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사업활동, 재무상태,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.

Ethic 4장 생명윤리

1.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한미인의 약속

- (1) 사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, 인류가 추구하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(2) 인류의 건강을 위한 제약회사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지키며, 창조와 도전의 혁신 정신을 발전시켜 나간다.
- (3)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.

2.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한미인의 약속

- (1)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히 관리하며 제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의약품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.

- (2) 의약품 등의 안전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·평가·관리·보고하여 환자 안전을 보호한다.
- (3) 의약품 등의 투여로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상 사례,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(24시간 이내) 알린다.

Ethic 5장 보칙

1. 준수의무와 책임

- (1)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- (2) 대표이사, 임원,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규범의 준수여부를 관리, 감독할 책임이 있다.
- (3) 회사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윤리규범의 준수와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선서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2. 포상 및 징계

- (1) 대표이사는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현저히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사평가 반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- (2) 대표이사는 윤리규범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3.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및 위원회의 설치

- (1) 대표이사는 원활한 윤리경영의 추진과 윤리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(2)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윤리경영에 필요한 전담부서 및 관련 위원회를 설치, 운영하도록 한다.

4. 위반행위 신고 및 상담

- (1) 누구든지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알린다.
- (2)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- (3)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보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이 윤리규범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(2014. 10. 1 제정)은 폐기한다.